

제 2019-4호

2019년 3/4분기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 상담사법 입법추진과 상담분야의 시사점



●●● 목 차 ●●●

■ 상담사법 입법추진과 상담분야의 시사점

요약	2
I. 개요	3
II. 상담분야의 고용현황과 문제점	7
III. 타 전문직 관련 법률	9
IV. 상담사법 해외사례	11
V. 상담사법 추진 법률(안) 주요내용	13
VI. 상담분야 관련 시사점	15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김은경 연구위원 (02-2231-4733, aisru13@daum.net)

□ 상담사법 입법 추진과 상담분야의 시사점

(주제선정) ISC사무국 구성원 중심의 상담산업의 2019년도 상반기 전반적인 이슈 조사 분석을 통한 주제를 도출하고, 선임위원 자문을 비롯한 산업별 분과위원회 등 ISC 인력풀을 활용하여 기 도출된 주제의 정제과정 및 최종안 선정하였다.

이후 상담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획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학계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이슈를 기반으로 리포트 작성하였다.

(추진 배경 및 목적) 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임에도 여러 가지 법에서 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상담사의 권리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담분야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의 주도로 입법추진 중에 있으며, 상담사에 대한 처우와 신분보장, 나아가 상담분야의 발전을 기리고, 국가관리 영역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상담사법’ 입법을 추진하는 중이다.

본 고에서는 상담분야의 고용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담사법’의 주요내용, 상담사법 입법화 시 상담분야 노동시장 및 고용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상담분야 고용관련 문제점) 공공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해당 자격이 없이도 그 센터에서 일하기도 하는 등 국가자격만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현행 법률상 타전문직 관련 법률 비교) 상담사에 관한 법률은 없지만, 타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법률은 많이 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법’, ‘의료법’, ‘행정사법’,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한 전문직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상담사법(안)의 주요내용) 크게 8가지 항목과 4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총칙, 자격, 등록과 개업, 권리와 의무, 상담사협회, 상담윤리협의회, 지도 및 감독, 벌칙을 담고 있다.

(시사점) 상담사법 제정으로 인해 상담분야에 안정적인 고용환경 구축,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 마련, 상담교육인증제도 및 수련기관인증제도 실시, 개별상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노동시장 형성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I | 개요

□ 주제선정

–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3분기 이슈리포트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하여 산업 내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자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sk Research • 산업계 내 관련분야 이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 • 각 분과회의체를 통한 이슈 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기획회의 • 선정된 이슈관련 학계·현장 전문가 기획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리포트 작성 방향 • 활용계획 수립

[그림 1] 3분기 이슈리포트 주제 선정 프로세스

○ 1단계 : 데스크 리서치(Desk Research)

– ISC사무국 구성원 중심의 상담산업의 2019년도 상반기 전반적인 이슈 조사 분석을 통한 이슈 주제 도출

○ 2단계 : 전문가 회의 (ISC 인력풀)

– 선임위원 자문을 비롯한 산업별 분과위원회 등 ISC 인력풀을 활용하여 기 도출된 주제의 정제과정 및 최종안 선정 (기준: 이슈성, 시의성, 영향력 총점)

<표 1> 이슈리포트 주제

주 제	평 균
상담분야 인식·정체성 제고를 위한 조사	87
직업지도(job map) 개발	8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 개선관련 조사	80
상담사법 입법 추진현황 및 상담분야의 시사점	95

○ 3단계 : 전문가 TF회의 (학계/현장)

– ISC 인력풀 중심으로 선정된 이슈에 대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획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학계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을 기반으로 적정성을 검토함

- 4단계 : 최종 선정된 이슈에 대한 리포트 작성 및 활용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 기획회의를 통해 검증된 최종 이슈를 기반으로 리포트 작성 및 산업 내 활용계획 수립, 리포트를 통한 산업내 업종별 시사점 및 ISC 역할 제시 등

□ 추진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사회적 사건발생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개입 과정에서 학대행위자 등과 마찰이나 폭력 등에 노출되기도 하며(이호중, 2009),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신준섭, 2008).
- 국민의 심리건강에 대한 관심 대두
 -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이나 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을 큰 충격에 빠지게 하여 일시적인 우울증을 경험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에 많은 상담전문가들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직·간접적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개입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을 돕는데 기여하였다.
 - 이러한 국가재난이나 위기경험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상담이 개인에서 사회·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김정진, 2016).
- 국민의 심리건강에 대한 책임소재를 개인에서 국가로 전환 필요
 -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력과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상담사에 대한 가해자의 위협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함을 토로하였다.
 - 게다가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사실상 현장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후 가해자가 기관으로 찾아와 상담사를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상담현장에서 겪는 고위기상황에 개인의 책임을 논하기보다 이제는 국가의 보호아래에서 안전하게 상담업무에 임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상담과 상담사의 법적 의무 규정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상담’ 과 ‘상담사의 법적 의무’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담사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보수교육 의무, 영리목적운영금지 의무 등이다(김정진, 2016).
- 그러나, 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임에도 여러 가지 법에서 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상담사의 권리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이미 법률로써 보호받고 있는 다른 전문직들 즉, 변호사법, 사회복지사법 등과 비교해 보면 상담사에 대한 보호 제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상위법으로써 ‘상담사법’ 의 필요성

-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의 급증 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위기요소가 증가하면서 학교상담의 법제화에 대한 시도로 이철우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학교상담 관련 법안들이 제18대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유는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나, 학교상담법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사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등의 전문교사들의 경우 학교 밖의 영역에서도 의료인, 사서, 영양사와 같이 공인된 자격증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된 개별적 법률들이 실효되고 있지만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상담사에 관한 공인 자격증과 관련 법률이 부재한 것이 입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 제21조)에 의해 자격과 배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보건교사와는 달리 시행령(제33-35조, 40조)에 의해 각급 단위 학교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고용형태가 양질의 노동환경을 갖기에 한계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 현행 상담관련 법률의 상담사모법 지정 한계

- 청소년상담의 경우 :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제도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고 청소년상담사들이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기본법 자체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법률(청소년기본법 제1조)이고 상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 외의 다른 상담분야에까지 법적 근거가 확대되기 어렵다.

- 직업상담사의 경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 제21조)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많은 직업상담원의 하나이며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22조) 외의 다른 심리상담 업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 따라서 추후 학교상담법을 포함한 세부 상담관련 분야의 법률이 제정되고 각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기초가 되는 상위법으로서의 상담사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 연구의 목적

-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서 상담분야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의 주도로 입법추진 중에 있으며, 상담사에 대한 처우와 신분보장, 나아가 상담분야의 발전을 기리고, 국가관리 영역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담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상담사법 입법화 시 상담분야 노동시장 및 고용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상담분야의 자격과 고용 문제점

- 2019년 9월 말까지 등록된 ‘심리상담’ 민간자격증은 2,912개로 전체 민간자격증 36,604개 중 7.9%에 달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또한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신규등록건수가 2015년에는 567건, 2016년에는 547건, 2017년에는 430건, 2019년에는 381개의 신규 민간자격이 등록되는 등 상담자격의 증가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 그러나 민간에서의 상담활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상담자 또는 상담기관의 비윤리적, 위법적 사례가 발생하고, 상업적 수익모델에 따른 상담기관운영이 상담의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김영근 등, 2012; 김정진, 2016).
- 공공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해당 자격이 없이도 그 센터에서 일하기도 하는 등 국가자격만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 게다가 민간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이 필수라고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필수적이지만 학교의 위클래스나 교육지원청의 위센터에는 민간상담자격으로도 학교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자가 많다.
- 이는 해당 국가자격이 공공기관에서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해당 분야 자격을 위한 필수 자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자격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 상담분야의 고용현황과 문제점

- 상담 관련 안전한 직장은 대기업에 고용된 소수의 상담자나 학교, 공공 기관(예: 학교에 고용된 전문상담교사)에 고용된 몇몇 상담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안정된 상담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현격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심리상담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이상민 외, 2018).

- (준)공공기관(예: Wee센터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대학 내 상담센터 상담자 등)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단기계약직(2년)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 일부 상담기관에서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사 학위급의 상담자를 2년마다 매번 교체하기도 한다고 한다. 같은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상담자들이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직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기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 게다가 시장의 원리로 볼 때 공급(상담전공 졸업자)이 수요(상담을 받고자하는 내담자)를 앞서가다 보니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플랫폼이 상담 분야에 유입되었다.
- 이 EAP 모형을 통해 5,000명 이상의 심리상담자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기업 혹은 관공서에서 상담서비스를 수주 받은 후, 상담자에게는 박봉을 제공하고 일을 하게하거나, 프랜차이즈형 상담소가 생기면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요-공급 선에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구직형태를 갖기 어렵게 되는 등 개별상담자들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III
현행 법률상 타전문직 관련 법률 비교
□ 전문직 종사자 법률

- 아직, 상담사에 관한 법률은 없지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법률은 많이 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법’, ‘의료법’, ‘행정사법’,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한 전문직들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표 2> 현행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 법률

구 분	제1조
변호사법	변호사법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리사법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 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인법	이 법은 공증인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약사법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사법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 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김정진(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p.251.

○ 변호사법

- 법률 사건 변호의 일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사건에 관한 변호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의료법

-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가 보장되어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는 강하게 금지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권 독점을 보장하고 있다.

○ 행정사법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행정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사회복지사법

-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수에 대해서도 국가가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
- 특히,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사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회복지사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많은 법률에서 ‘상담사’를 제외한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들의 업무에 관해 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보장받고 있지만, 상담사가 전문직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민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전문가임에도 여전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해외 상담사법 관련 사례(미국)

□ 개요

- 미국은 현재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지구에 상담전문직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일종의 상담사자격인증법이 만들어져 있다(김영근 외, 2012). 대표적으로 뉴욕 주의 상담사와 관련된 법률과 미네소타주의 공인상담법을 살펴보겠다.

□ 뉴욕 주 ‘교육법 제8편 직업파트’

- 뉴욕 주에서는 ‘교육법 제 8편 직업파트’에 상담사 자격규정 등과 관련한 법률을 명시하였다.
- 뉴욕 주 교육법 제163장 ‘정신건강실천가’ 규정,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을 직접 다루는 직업종사자를 ‘정신건강상담사’, ‘부부·가족치료사’, ‘예술치료사’, ‘정신분석가’로 4가지로 구분한다.
- 특히 정신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본 법에서 규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거나 본 법에서 면제를 받는 자만이 정신건강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신건강상담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라이선스를 갖춘 정신건강상담사’ 혹은 정신건강 상담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 법에서 규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그 어떤 의사, 의사 보조사, 등록된 전문간호사, 간호인,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행동분석가도 ‘공인정신건강상담사’, ‘공인부부·가족치료사’, ‘공인예술치료사’ 혹은 ‘공인정신분석가’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 중요 내용

-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에서는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법률에 의해 면허로부터 면제된 자가 아니라면 전문상담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공인상담사 또는 LPC라는 단어의 조합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148B.591조) 상담사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상담사 자격증의 양도 또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전문상담 자격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48B.58조).
- 아울러 공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지원하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좋은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 또는 유관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여(148B.53조), 공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지원하는 자의 인격적 자질, 역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김영근 외, 2012).
- 이처럼 미국에서도 상담사 관련법을 제정하여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상담사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담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V
상담사법 추진 법률안 주요내용(안)

○ ‘상담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상담사법의 구성

구 분	내 용
1. 총칙	제1조 상담사법의 제정목적 제2조 상담사의 사명 규정 제3조 상담사의 직무와 지위 제4조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5조 용어 정의 제6조 상담사의 종류
2. 상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7조 자격 제8조 자격시험 제9조 결격사유
3. 상담사의 ‘등록과 개업’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격등록 제11조 등록거부 제12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 휴업과 폐업
4. 상담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상담소 제15조 사무직원 제16조 보수 제17조 책임 제18조 금지행위 제19조 광고 제20조 품위유지 의무 등 제21조 비밀보장의 의미 제22조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3조 상담일지 작성 및 보관 제24조 회칙준수의무
5. ‘상담사협회’에 관한 규정	제25조 목적 및 설립 제26조 협회의 정관 제27조 준용 제28조 협회의 지도·감독 등 제29조 가입 및 탈퇴 제30조 상담사 연수 및 보수교육
6. ‘상담윤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31조 상담윤리협의회 제32조 윤리협의회의 업무와 구성
7.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3조 징계위원회 제34조 징계의 종류 제35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제36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제37조 징계 시효
8. ‘벌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출처: 김정진(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pp.251~267.

○ 총칙

- 상담사법의 제정목적(제1조)을 명시하였고, 상담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공공성을 지닌 상담전문직으로서 내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규정(제3조)하였다.
- 또한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는 상담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제4조)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상담과 상담사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상담사’에 대한 용어 정의(제5조)를 하였다. 단순히 상담사라는 표현보다 ‘심리상담전문가’, ‘상담치유전문가’, ‘심리치유전문가’ 등의 용어로 전문성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용어사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다.

○ 상담사 ‘자격’에 관한 규정

- 상담사의 자격을 민간기관이나 학회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하기에 상담사의 자격을 상담사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로 제한하였다(제7조).
- 상담과 평생교육과의 밀접한 관계를 주지하여 주무행정청을 교육부로 정하였으며, 교육과정이나 훈련, 설치기준, 허가도 교육부 관장사항(제8조)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상담사 자격시험에 관한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교육부장관령에 규정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왔던 민간 상담사 자격의 이미지를 벗어나 공적인 전문가로서 상담사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 상담사 ‘등록과 개업’에 관한 규정

-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자는 그 자격의 업을 하려면 국가기관이나 협회 등에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상담업을 하려면 반드시 상담사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제10조)

○ 상담사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 상담사는 상담소를 개설 할 수 있지만 둘 이상의 상담소를 둘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제14조), 내담자에게 상담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6조), 아울러 상담행위 이외의 청탁이나 뇌물로 인한 금품수수는 금지되도록 규정

하였다. 상담일지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제23조)에서 상담사는 내담자들에게 연속적,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법 또는 기관의 절차대로 필요한 기록을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상담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공익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과 관련있다.

○ ‘상담사협회’ 에 관한 규정

-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담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상담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담사협회라는 조직이 꼭 필요하다(제25조). 또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마쳐야 하고, 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기존 상담사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0조).

○ ‘상담윤리협의회’ 에 관한 규정

- 상담윤리를 확보하고, 건전한 상담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담사윤리협의회를 구성함을 명시하였고(제31조), 그 업무와 구성을 제시하였다(제32조).

○ ‘지도 및 감독’ 에 관한 규정

- 상담사협회의 건전한 발전과 조직 유지를 위해서 징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제33조), 영구제명, 등록취소, 정직, 과태료, 견책의 다섯가지로 규정하였으며(제34조), 징계사유를 명시하였다(제35조)

○ ‘벌칙’ 에 관한 규정

- 벌칙은 형사처벌을 뜻한다. 상담사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벌칙(제38조)과 양벌규정(제39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 종합하면

- ‘상담사법’ 은 상담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의 목적을 갖는다. 상담사 스스로 상담사법에 규정한 엄격한 국가 자격시험을 통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먼저 구비하여야 하며, 상담사협회 법인을 조직하여 상담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및 전문직 자격을 가진 상담사만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보호하면서, 법적·윤리적 규정으로 철저히 통제·규제함으로써 상담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담 및 상담사 제도를 확립하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VI 상담분야 관련 시사점

□ 안정적인 고용환경 구축

- 상담사법 제정은 현행 상담 고용시장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이 능력 인정형 자격의 성격에서 의사, 변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구직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자격인 업무 독점형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 이는 비전문상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상담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여 전문상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전문상담의 위상을 제고하게 되며,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곧 양질의 고용형태, 안정적인 고용환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 마련

- 자격기본법 3조에는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상담관련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은 각각 자신의 자격이 NCS에 어떻게 기반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심리상담분야의 자격제도로 심리상담사 1급(NCS 7수준), 심리상담사 2급(NCS 5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과정에 NCS 기반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과정평가형 검정자격과 연계하는 방안모색을 고려할 수 있다.

□ 상담교육인증제도 및 수련기관인증제도 실시

- ‘상담사법’ 이 입법화되면, 상담교육인증제도를 통해 상담 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얻는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수련기관인증제도는 임상심리학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담 수련기관의 자격, 수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 여부, 상담 사례의 수 등을 심사하여 수련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별상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노동시장 형성

- 비공인 민간 자격증이 남발하고 상담수련생들이 상담 자격증과 관련하여 혼란과

비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사법’ 제정은 학과와 수련 기관에서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개별상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노동시장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표방한다. 무엇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담자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상담자에게 법적인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학교상담진흥법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학교 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 김인규 (2009). 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 연구. 교육학연구, 47(1), 20-47.
- 김정진 (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247-271.
- 신준섭(2008).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클라이언트 폭력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7, 37-68.
- 이상민, 김은하, 김지연, 선혜연(2018).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463-474.
- 이혜연(2012.10.24.). 이학영 의원 “아동보호기관 상담사, 가해자 횡포 심각해” . 프라임경제.
- 이호중(2009). 아동학대개입시 상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강법학, 11(1), 381-410.
- 황준성, 김성기, 이덕난, 안병천 (2011). 학교상담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347-374.